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중 반덤핑 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Anti-dumping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염희삭

2021년 2월

한·중 반덤핑 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Anti-dumping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지도교수 김 희 철

염 희 삭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염희삭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한·중 반덤핑 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Anti-dumping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지도교수 김희철

염희삭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염희삭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홍재성	
위원	최윤석	
위원	김희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A Case Study on Anti-dumping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YAN XISHUO

(Supervised by professor Hee-cheol Kim)

Submit this dissertation as a master's degree dissertation

2020 .1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ee-cheol Kim, Prof. of Trad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2
제2장 반덤핑에 관한 이론적 분석 및 선행연구	4
제1절 WTO의 반덤핑 협정	4
1. WTO의 반덤핑	4
2. WTO 반덤핑제도 운영 절차	5
제2절 반덤핑에 관한 이론적 분석	9
1. 덤핑 및 반덤핑의 정의	9
2. 반덤핑 발생원인	10
3. 반덤핑의 효과	1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제3장 한·중 반덤핑 제도 및 분쟁	24
제1절 한·중 반덤핑 제도	24
1. 한국의 반덤핑제도	24
2. 중국의 반덤핑제도	33
3. 한·중 양국의 반덤핑 제도 비교	42
제2절 한·중 양국의 반덤핑 분쟁 현황	45
1. 한·중 무역 현황	45
2. 한·중 반덤핑 분쟁 현황	48
제4장 한·중 반덤핑 사례분석	53
제1절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사례분석	53
1.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배경	53

2.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분쟁사례	53
3.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분쟁원인	55
4.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분쟁대책 및 시사점	56
제2절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사례분석	58
1.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배경	58
2.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분쟁사례	59
3.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분쟁원인	61
4.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분쟁대책 및 시사점	61
제5장 결론	64
제1절 요약 및 결론	64
제2절 향후전망	66
참고문헌	67
Abstract	71

표 목차

<표 2-1>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
<표 3-1> 한국의 대(對) 중국 무역수지	46
<표 3-2> 한국의 대(對) 중국 무역흑자액	47
<표 3-3> 중국은 한국 무역 수출의 비중	48
<표 3-4> 한국의 반덤핑조사 연도별 현황	49
<표 3-5> 한국의 반덤핑조사 국가별 현황	50
<표 3-6> 한국의 대(對) 중국 반덤핑 사건	51
<표 3-7> 중국의 대(對) 한국 반덤핑 사건	52
<표 4-1>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 반덤핑 판정 과정	55
<표 4-2>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판정 과정	60

그림 목차

<그림 3-1> 한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도	32
<그림 3-2> 중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도	4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덤핑이란 상품을 헐값에 파는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정당하지 않은 무역행위라고 한다. 법조계에서 정하는 덤핑의 개념은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즉, 제품을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덤핑행위는 수입국의 산업에 손해를 입히고 덤핑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덤핑은 수입국 산업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해 또한 노동 고용, 시장 질서, 투자 환경, 기술혁신,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덤핑은 수출국 자체와 관련 나라의 경제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쳐 본국 내 다른 기업의 수출 지분과 역외시장 점유율을 밀어내고 다른 기업의 적정 이익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덤핑은 부당한 무역 행위이자 위법행위다. 그러므로 반덤핑은 세계 무역 기구로서 각국에 법에 따라 경제 발전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세계의 덤핑과 반덤핑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시작된 반덤핑 건수는 총 2,484건이었다.¹⁾ 이 가운데 중국은 710건으로 전체의 67.49%를 차지해 세계에서 반덤핑 피해가 가장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320건이었으며 전체 건수와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수출 규모를 고려할 때는 중국과 한국은 모두 반덤핑의 주요 대상 나라이다.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피소 건수가 급증해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저항도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덤핑은 수출 확대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한중 양국은 모두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은 모두 고급 명품이나 첨단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수출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반덤핑 역사가 짧고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능력도 매우 약한 편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14건의 반덤핑이 발생하였다. 한국 기업은

1)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http://www.mofcom.gov.cn/>

55건의 소송을 당해 전체 반덤핑 건수의 48.24%를 차지하였다.²⁾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확대되는 무역적자와 같이 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한국 제품의 수출구조가 다변화되지 않은 점, 일부 품목(석유화학 제품 등)의 대중 수출 집중 등도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한·중 양국의 반덤핑에 관련된 법규 자료를 바탕으로 한·중 반덤핑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양국 반덤핑 분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중 사이에 가장 치열했던 반덤핑 제소 사례에 대해 검토하며, 발생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언하고자 한다. 2016년에 한국 타일 시장 규모는 약 6억 2700만 달러로, 이 중에 중국산 타일은 약 60%를, 한국산 타일은 약 30%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대(對)중국 타일의 반덤핑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신개념 발전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로, 2011년 한국 대(對)중국 수출 규모가 2010년의 6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약 12억 달러에 달하였다.³⁾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반덤핑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로써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는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자료와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은 한국 대(對)중국 타일 반덤핑 사례와 중국 대(對)한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사례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

2)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http://www.mofcom.gov.cn/>

3) 中國貿易救濟信息网: <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

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 반덤핑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한·중 반덤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논문의 전체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반덤핑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즉, 덤핑과 반덤핑의 정의, 반덤핑의 발생원인, 반덤핑의 효과 및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반덤핑 제도, 중국의 반덤핑 제도, 한중 양국의 반덤핑 제도 비교 및 한중 양국의 반덤핑 무역 현황과 분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중 반덤핑 분쟁 사례에 대해 분석하여 반덤핑 분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 반덤핑에 관한 이론적 분석 및 선행연구

제1절 WTO의 반덤핑 협정

1. WTO의 반덤핑

WTO 반덤핑 협정에 의해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국내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 가격과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GATT(1994)협정에서도 덤핑에 대해 ‘수출국 생산자가 정상적 가격 이하로 수출하여 상대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혹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그리고 동종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반덤핑 제도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관련된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무역 규범으로 발전하였다. 보편적으로 GATT 체제하에서 캐나다, EU, 호주, 미국 등 네 개 국가가 세계 전체의 반덤핑조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피소 나라로 나타나는 전통적 모습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반덤핑조치의 전통적 관행에 확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히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 나라들이 새롭게 반덤핑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국가들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⁴⁾

덤핑상품에 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과연 정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은 경제학자들 및 각국의 정책입안자들 간 논쟁이 되는 문제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므로 자유시장주의의 목표 중 하나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면에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덤핑관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제

4) 박노형·박성훈,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23.

창하는 경제학자 혹은 정책학자들은 덤핑 행위가 국제 사이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인위적 비교우위를 만들어 반덤핑관세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WTO 반덤핑협정 및 GATT(1994)협정에서도 덤핑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하는 관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덤핑은 비교우위가 차지하는 국가로부터 비교우위가 없는 나라로 해당 상품의 생산지를 바꾸게 해서 국제무역을 왜곡시킨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더불어 덤핑이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간의 효과적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Stewart(1991)에 따라서도 설명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덤핑행위에 대하여 이를 대표적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및 덤핑행위는 비교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서 수출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며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주 이용되는 반덤핑 조치가 오히려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과 대다수 나라의 국내법은 전자의 입장에서 덤핑행위를 규제하고 있다.⁵⁾

2. WTO 반덤핑제도 운영 절차

WTO반덤핑협정에 의하면 ①덤핑행위의 존재, ②국내산업의 실제적인 피해, ③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제적인 피해 사이에서의 인과관계 존재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수입국이 덤핑물품에 관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WTO반덤핑협정 및 기존 GATT체제와의 제일 큰 차이점은 GATT체제는 네거티브 적용방식이며 WTO협정은 포지티브 적용방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GATT체제에서는 어떤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에만 법적 효력이 나타났지만, WTO 체제하에서 WTO 회원국들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규제수단으로 반덤핑규제가 제일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1980년 이후에 반덤핑법을 설립하는 개발도상국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⁶⁾

5) 朱欖叶, “WTO 爭端解決案例新編”, 中國法制出版社, 2018, pp.26-33.

6) 呂薇平, “WTO 爭端解決机制的正当程序研究”, 法律出版社, 2015, pp.08-15.

1) 덤핑행위의 존재

WTO반덤핑협정에 의하면 ‘한 나라에서 기타 나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 소비되는 동종물품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 가능한 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그 상품은 덤핑된 것’이라고 규정된다. 여기서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 가능한 가격(Normal Value)이란 반덤핑 조사기간 중에서 조사된 수출국 내 거래가격(내수판매가격, home market sales)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종물품(like product)은 고려대상인 상품과 전부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의미하고 그러한 상품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는데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아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다른 상품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을 비교하며 그 결과로써 덤핑마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마진 정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대로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같은 기간 내에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두 번째, 조사대상국 시장의 동종물품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세 번째, 정상가격 혹은 수출가격이 있지 않을 때 대체할 비교가격을 산정한다.⁷⁾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덤핑행위의 존재와 같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관한 피해도 확인해야 한다. WTO반덤핑협정에서는 국내 산업이라는 것은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혹은 이들 중 전체의 생산량이 상품의 국내 전체 생산량의 상당부분(major proportion)을 점유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WTO반덤핑협정에서 피해란 덤핑으로 야기한 국내산업의 실제적인 피해(material injury) 국내 산업에 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혹은 산업 확립에 관한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을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의 객관적 입증 방법으로 WTO반덤핑협정에서 수입국의 덤핑 수입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는지, 혹은 수입국의 동종물품 가격이 덤핑 수입품의 가격으로 인하여 상당한 가격하락이 나타나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검증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덤핑이 국내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와 덤핑 수입의 규모를 검토하며, 국내 산업에 미

7) 이평,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중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치는 영향과 덤핑수입의 결과를 경제요소 및 지표(피해판정요소, all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규정한다. WTO는 피해판정요소에 관한 언급만 하는 반면에 구체적인 분석방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WTO회원국은 WTO에서 규정된 모두 15개의 피해 판정요소 전부를 국가 특성에 의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한다.⁸⁾

3) 덤핑과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하여(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국내 산업에 피해가 나타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형성한다고 규정한다.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수입국이 제시한 전부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여 결정되고 WTO는 추가로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효과를 제외하는 요인들로 야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덤핑 때문에 전가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덤핑을 제외하는 요인들의 예로는 ①덤핑가격으로 인해 판매되지 않는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 ②국내산업 소비형태의 변화나 동종물품 수요의 감소, ③외국생산자 및 국내 생산자의 제한적 무역관행 및 양자 간 경쟁에 의한 효과, ④기술개발에 의한 효과, ⑤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의 생산성과 연관된 효과 등이 있다.⁹⁾

4) 반덤핑제도 운영절차

WTO반덤핑협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반덤핑조사는 수입국 내 국내 산업의 조사개시 신청에 따라 개시되며 신청이 없어도 수입국인 조사 당국은 조사개시 결정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반덤핑조사 신청 가능한 국내 산업이란 동종관계와 덤핑물품에 있는 물품의 생산자 혹은 이들 중 동종물품 전부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뜻한다. 국내 산업에 관한 조사신청의 효력은 조사신청에 관한 반대 혹은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그 효력이 존재하고,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전부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 조사개시는 철회될 것이다.¹⁰⁾

8) 楊國華, “WTO 中國案例評析”, 中國法制出版社, 2018, pp.38-49.

9) 王衡, “中國 WTO 爭端應對法律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19, pp.56-59.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사당국은 조사개시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사의 개시를 정당히 할 수 있는 덤핑 및 피해의 존재, 또는 이들 간 인과관계의 입증까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덤핑조사절차는 덤핑의 존재 검증 및 국내 산업의 실제적 피해의 존재 여부 등 두 가지 조사로 이루어지고 둘 중 하나는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덤핑조사절차는 종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덤핑 마진이 일정수준 미만이거나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덤핑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면 조사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덤핑 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최소허용수준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특정 나라로부터의 덤핑 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 내 동종물품 수입물량 3% 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3% 미만 점유율을 지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의 7%를 미만이면 이러한 덤핑수입량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1년 이내 종료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개시 후 18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¹¹⁾

반덤핑조사를 통하여 덤핑 및 피해 간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최종 판정하기 전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이 확인되며 생산자 측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잠정적인 긍정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가격체결이 나타날 수 있다. 수입국의 조사 당국은 수출자로부터 덤핑으로 인한 피해 효과가 없었다고 납득할 정도의 수입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가격으로 인해 수출을 종료하겠다는 자발적 가격체결을 받는 경우 잠정조치 혹은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정지 혹은 종결할 수 있다. 수출국에서 가격체결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은 판정된 덤핑 마진이 미만한 반덤핑 관세를 징수 및 부과한다. 반덤핑 조치는 가격인상 약속을 포함해 5년 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그 후에 일몰재심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¹²⁾

10) 朱欒叶、賀小勇, “WTO 爭端解決機制研究”, 上海世紀出版集團, 2017, pp.15-20.

11) 肖偉, “國際反傾銷法律與實務—歐共體卷”, 知識產權出版社, 2018, pp.20-31.

12) 于永達、戴天宇, “反傾銷理論與實務”, 清華大學出版社, 2018, pp.09-14.

제2절 반덤핑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덤핑 및 반덤핑의 정의

1) 덤핑

'덤핑'이라는 국제 무역의 고유명사가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경제학적 의미와 법학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¹³⁾

(1) 경제학적 정의

덤핑의 경제학 정의는 경제학자인 Jacob Viner 교수가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시장 간의 가격차별 즉 같은 상품을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판매하거나, 어떤 회사가 해외에서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제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한다.¹⁴⁾

(2) 법적 정의

관세 및 무역 협정 제6조 제1항은 덤핑에 대하여 법률상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한 나라의 상품이 이 제품의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곳에 팔리는 행위를 밝히고 있다. 국가는 실질적인 손해로 수입국의 어느 한 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어떤 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경우에는 덤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학적으로는 덤핑이란 상품을 정상 가치보다 싸게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는 무역행위, 혹은 상품을 헐값에 팔아 치우는 행위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덤핑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분류한다. 하나는 국내 시장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가보다 낮은 덤핑이며, 이를 원가 덤핑이라고 말한다.¹⁵⁾

13) 劉善春, “反傾銷訴訟理論与實務”,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7, pp.39-45.

14) 李磊, “當代國際反傾銷与對華反傾銷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17, pp.19-27.

15) 郭羽誕, “反傾銷与中國產業安”, 上海財經大學出版社, 2016, pp.8-23.

2) 반덤핑

덤핑이 있으면 반드시 반덤핑도 존재한다. 반덤핑은 수입국 주관 당국이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법률에 따라 덤핑행위를 한 외국 수출업체를 입건, 조사,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반덤핑 조치는 적발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와 수출업자의 가격 약속 이행 등 두 가지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반덤핑 법률은 《GATT 1994 Article VI》 즉, 관세 및 무역 총협정 1994 제6조)과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즉, 《1994년 관세 및 무역 총협정 제6조 실시에 관한 협정》이다. 이를 WTO 반덤핑협정(WTO)이라고 부른다. 각국의 반덤핑 법률은 모두 이 두 반덤핑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정비된다. 한 나라의 반덤핑 조사기관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로 자국의 반덤핑 법률 규정에 근거하지만 동시에 이들 두 국제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국의 반덤핑법은 모두 실체법과 절차법을 융합한 법률 규범이다. 실체법에는 주로 덤핑과 손상의 확정 및 기준, 덤핑과 손해의 인과 인정, 반덤핑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절차법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 입안, 조사, 증거, 청문, 재정,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WTO와 각국의 반덤핑 법률은 반덤핑 조치를 채택할 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제품을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덤핑 행위는 수입국 산업에 손해를 입혔다. 셋 번째는 덤핑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¹⁶⁾

2. 반덤핑 발생원인

1) 캐리 이론

반덤핑 금지에 관하여 동기와 원인은 현재 수많은 학설들 사이에서 무역 장벽의 제거가 덤핑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가 반덤핑을 하는 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현저한 학설이 있다. 무역장벽의 제거 이론은 시장 분할을 그리

16) 翁國民, “貿易救濟體系研究”, 法律出版社, 2017, pp.43-46.

나 이상적인 자유무역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능력이 뛰어나 다른 거래에서 달성한 가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윤 추구를 통해 각국의 차익 아래 시장의 가격 차이가 빠르게 해소된다면 반덤핑은 의미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경쟁과 자유를 가르는 단일 시장에서는 권역 간 가격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와 같은 가격 차이가 원가와 무관하거나 관계가 작으면 투기꾼이 나타나 매매에서 이익을 챙기게 된다. 이와 함께 가격 차이의 존재 기반 중 하나는 독점이다. 시장이 소수의 판매자에게 장악당하고 구매자 선택의 여지가 크게 제한되어 저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면 가격차별은 실현된다. 반덤핑은 실질적으로 일부 판매자의 부담을 늘어 시키고, 다른 판매자에게 일정한 우위를 제공함으로써 독점을 조장해서 오히려 가격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반독점 법률과 제도의 시행과 함께 경쟁법의 도입도 필요하다. 다른 관점에서 덤핑의 발생은 또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의 존재로 인해 국내 산업이 더 적은 경쟁에 직면하여 거대한 시장 지위를 얻고 나아가 독점을 해서 독점 이익을 얻는다. 과점가격 유지와 규모화 생산에 대비한 엄청난 생산능력을 위해 국내 산업은 여분의 생산 능력을 다른 나라의 시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의 가격이 과점가격보다 낮더라도 이것은 덤핑으로 이어진다. 무역장벽이 일단 해소되면 이런 덤핑 가능성도 없어진다. 이 밖에 경쟁법을 이 분야에 도입하면 시장 지위 남용에 따른 가격차별도 경쟁법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경쟁법 대체 반덤핑 규칙은 반독점이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덤핑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그리 쉽지 않다. 국제 무역과 경제에서 여전히 심각한 보호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쟁법 규칙을 창안하는 것도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지 이론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다. 한 자유무역지역이 약간의 무역장벽을 없앤 후에도 자유무역지역 내에 대량의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 무역 협정이나 자유무역 지역의 달성 또는 수립이 무역장벽의 소멸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여전히 가격차별이 존재하고, 미국이 덤핑상품을 재수출하는 장벽을 제거한 이후에도 덤핑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덤핑제품이 현지 시장의 수요를 초과하지 않고, 많은 덤핑제품이 현지 제품의 원료와 투입, 덤핑제품의 저가가 이미 단말기 소비자에게 큰 수익

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경영자는 제품을 다른 시장에 전매할 수 없었다.¹⁷⁾

2) 마찰 소모 이론

마찰 소모 이론은 헤지 이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론은 자유무역 구역 내에서 법적인 규칙의 변동 없이 반덤핑이 마찰을 초래하고 소모가 발생하며 즉 한쪽의 반덤핑과 함께 반덤핑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반덤핑을 폐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우선,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감소함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과의 경쟁, 즉 홈 앤드 어웨이에서 경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갑 시장의 회사가 을 시장에 덤핑하는 한편, 을 시장의 회사들은 갑 시장에 덤핑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징계는 자제하고 덤핑은 자제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 직접투자가 반덤핑 사용을 감소시킨다. 외국 회사에 대한 반덤핑은 자국 회사의 해외 관련 회사에 대한 반덤핑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소모 이론은 하나의 숨겨진 전제가 두 주체 사이에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즉, 양쪽이 동시에 반덤핑 하거나 덤핑을 하면 양쪽 모두의 수익이나 손실이 대체로 상당할 것이고, 한쪽의 힘이 다른 쪽보다 현저히 크면 그쪽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이론의 실현에는 각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충분히 긴밀해야 하며 마찰이 양측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¹⁸⁾

3) 통합 추진 이론

이 이론은 반덤핑 금지 조치는 자유무역 지역 구성원들의 경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쟁법 규칙에 대해 이 이론은 반덤핑 금지 조치에 대해 각국 경쟁법 간의 상호 조정 또는 통일을 창제하는 경쟁법은 필요하거나 충분한 것이 아니며, 즉 양자 간에 실질적인 연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는 정부가 반덤핑을 포기하겠다는 전제는 지역무역 협정이 각국 정부가 직접 다국적 무역에 개입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론 또한, 약간의 곤경에 처해 있다. 현재 경제 일체화를 약간의

17) 袁磊, “反傾銷會計”,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15, pp.58-65.

18) 顏延, “反傾銷司法會計——會計學視野下的反傾銷”. 中信出版社, 2016, pp.50-55.

자유무역 지역 협정으로 인정하는 목적은 협의할 가치가 있다. 논의된 바에 의하면 약간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 사이의 심도깊은 경제 통합은 현시점에서 볼 때 비현실적인 것 같다. 더불어 두 나라가 경제 통합을 위해 양보를 하고 서로 반덤핑 사용을 금지하기로 약속하는 대신에 두 나라는 한 가지도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포기하였다.¹⁹⁾

3. 반덤핑의 효과

반덤핑의 합리성도 의심스러운데 많은 나라가 이미 대응을 시작해 역내 무역협정에서 다른 배치를 하고 있지만, 반덤핑 제도는 무역자유화의 대립면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특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적인 기반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역내에서도 경쟁법이 반덤핑제도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²⁰⁾

1) 자유무역에서의 반덤핑의 가치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의 감소와 이미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장기적인 무역 자유화는 이미 많은 무역장벽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관세 분야는 특히 그렇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중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관세라는 보호조치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짐에 따라 국내 생산자들이 독점을 유지하여 초과이익을 얻는 동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모든 가용을 취할 것이다. 상인에 있어서 날카로운 안목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좋은 선택이 된다. 따라서 상인들은 반덤핑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나라도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원동력이 국내 상인들을 제외한다. 전체적으로 무역 자유화는 시장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여 시장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무역이 경제 주기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후 두 가지는 바로 정부의 경제 활동에서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향상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저

19) 呂航譯, “歐共體反傾銷制度的突出特點”, 國際經貿探索, 2015, pp.58-65.

20) 卜海, “國際經濟中的傾銷與反傾銷”, 中國經濟出版社, 2013, pp.07-09.

경쟁력 생산자 도태를 수반한다. 통상 수입국의 국내 생산자는 이곳의 저 경쟁력 생산업자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부도까지 난다. 경쟁의 압력 속에서 이러한 생산업자들은 정부를 압박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게 할 것이다. 또 수출국들이 수입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어려워 수입국 내 생산업자들이 정부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 국내 기업의 부진, 파산은 고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고용률은 정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심지어 많은 경우 성장보다 고용률에 대한 정부의 고려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압력은 정부의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형성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반덤핑 조치를 포함한 무역 구제조치는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거나 대응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비록 무역 구제조치가 무역 자유화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무역 자유화는 통과될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여 총 사회적 부(富)를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지만, 이러한 증가가 균일하고 평균적인 것은 아니다. 비교 우위가 여전히 매우 나쁜 나라에서 무역 자유화가 국내 시장을 심각하게 강타할 것이며, 이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비록 우리가 그 나라가 무역 자유화 이후에 그 나라의 전반적인 부가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산업은 필연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 이 제품 내의 사람들의 부는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사람은 부의 증가에 대한 민감도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이것은 경제학과 심리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행복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다국적 무역에 대한 규제를 초래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²¹⁾

따라서 만약 한 국가가 자유무역에 대하여 무역구제 조치는 자유무역이 국가의 이익을 해치거나 국내의 압력이 아닌 국내의 압력에 의해 무역구제를 가해야 하는 등의 '안전줄' 역할을 한다. 어느 정도 무역 구제책으로 많은 나라들이 무역 경제 자유화에 동참하도록 한다. 수입국 생산업자들은 무역 구제조치가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지역 자유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동시에 자유 무역이 가져올 커다란 기회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유무역협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 자유화는 더욱 발전되면서 불공정 무역과 무역장벽은 더욱 해소된다. 무역

21) 孔祥俊·吉羅洪, “反傾銷法律制度及申訴應訴指南”,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6, pp.16-20.

구제조치는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특정 조건하에서 무역 자유화의 유예를 통해 교섭 적응 등의 과정을 위한 공간을 남겨 놓는다. 무역의 자유는 무역 보호와 함께 한 바퀴의 대항과 타협 속에서 한 걸음씩 발전한다. 따라서 무역구제 조치는 매우 필요하나 이는 보호무역 차원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 차원에서도 성립된다. 반덤핑제도는 무역구제 조치로서 당연히 이런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가치는 덤핑 문제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것이며 그 자체로 독특한 가치다. 이러한 가치가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체되기 전에 반덤핑 제도의 존재는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반덤핑 제도에 대한 규제나 폐지가 당연히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메커니즘이 부족한 무역 구제조치라는 독특한 가치가 있을 때 이러한 변화는 역내 무역 협정의 타결을 지연시키고 지역통합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반덤핑을 규제하거나 폐지하는 수익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반덤핑 규제나 폐지가 지역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지역무역 협정은 물론 WTO 규칙도 수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 국가가 선택한 결과로서 덤핑의 발생이 직접 반덤핑 조치가 실시되도록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덤핑 조치를 정하는 것은 선택이고 임의적이다. 반덤핑 조치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한 국가의 반덤핑을 제한하는 선택은 그 국가가 무역 보호를 위해 새로운 무역 보호 도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새로 나타난 도구는 대개 상속될 것이며 이는 반덤핑 조치의 불합리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의 불합리성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무역구제 조치가 아닌 무역 보호조치로 여긴다면 반덤핑 조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 부족한 점들이 오히려 그 성공의 토대가 되어 이를 개량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득이 된다.²²⁾

2) 경쟁법으로 덤핑의 부족에 대응

반덤핑 제도는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역할들은 여전히 국제 무역의 실천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제 무역에 반덤핑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현실에서 토양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토양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토양 산출물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반덤핑제도를 경쟁법 제도로

22) 宋和平, “反傾銷法律制度概論”, 中國檢査出版社, 2010, pp.31-35.

간단히 바꾸는 것은 경쟁법을 또 다른 형태의 반덤핑 제도로 바꾸기 쉽다. 이는 반덤핑 배후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동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체의 가치는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역무역 협정은 역내에 WTO 다자간 반덤핑 규칙과는 다른 지역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쟁법도 몇몇 지역무역 협정 안에서 반덤핑 제도를 대체했을 뿐 주로 실천되지 못한다. 다자간 반덤핑제도는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고 경쟁법으로 실질적으로 변동하는 반덤핑 제도는 큰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덤핑 문제의 구체적 실천에 앞서서 경쟁력도 한계가 있다.

덤핑은 일종의 국제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범위 내의 독점은 약탈적 정가 행위이다. 덤핑은 경쟁력의 의미 있는 약탈적 정가와 현저하게 다르다. 우선 반독점 조사에서 피고는 높은 시장 지위를 가져야 하고, 시장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해야 한다. 물론 반덤핑 제도의 합리성이 의문시되는 이유 중 하나다. 다음으로 미국, 중국 등에서 약탈적 정가는 원가보다 낮은 판매를 요구하고 반덤핑은 정상 가치를 요구하며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 가능한 가격과 같이 원가보다 낮은 방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은 피고의 목적에 주목하여 선의의 문제를 고려하는 반면, 반덤핑은 피고의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반덤핑이 관심을 갖는 행위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한적이며 국내 산업의 피해에 불과하다는 점도 경쟁법의 초점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경쟁법 자체도 존치 곤경에 처해 있다. 경쟁법은 약탈적인 가격의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쟁법의 하에서 약탈적인 가격의 객관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또 경쟁법은 약탈적 가격 책정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후적 타격에 그치고 사전 예방적 효과도 크지 않다. 경쟁법을 덤핑사건에 적용하면 경쟁법 자체의 난제는 그대로 남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덤핑사건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 나라의 완전 장악력을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상인은 약탈적 정가에도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약탈적 정가는 첫 번째는 경쟁자가 시장 지위를 가지지 않고 파산 직전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경쟁자는 정부 또는 제 3자에게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셋 번째는 경쟁자가 다른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익을 통해 자신의 손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다. 미국 무역법은 세 번째 경우에 대해 단지 상당 기간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무역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독점법을 막는

것은 복잡하다.²³⁾

우선 미국의 순회 법정은 약탈에 대한 가격의 정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대법원은 약탈적 가격 책정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예상 하에 경쟁자가 해당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을 때까지의 손해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약탈적 정가에서는 반덤핑 규칙이 오히려 통일되어 덤핑 문제나 약탈적 정가 문제에 더 나은 구제를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덤핑법과 경쟁법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 먼저 두개의 기초 정의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물리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선호하며, 반독점법은 제품의 대체가능성과 교환 가능성에 더 주목한다. 하지만 해당 시장의 확인은 통상 반독점적 실천의 초점이 되는데 반덤핑은 이 점에 치중하지 않는다.²⁴⁾

다음으로 양자의 인정 기준도 다르다. 둘 중 가격원가 등 계산방법은 현저하게 다르며, 가중, 절충 등의 방법에도 서로 다른 규칙이 있다. 동시에 양자의 구제 방식도 다르다. 관세와 손해배상, 재판성 또한 확실히 다르고 조작의 차이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이것들이 현저하게 반덤핑과 경쟁법 실천을 구분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 상당한 문턱이 있다는 것은 경쟁법의 덤핑 영역의 유용성을 떨어진다. 설령 경쟁법이 덤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해도 경쟁법 인원이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쟁법 적용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약탈적 가격 책정, 가격차별 또는 시장 지위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이 국내 문제 해결할 때 마주치지 않았던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도 직면해야 한다. 가격, 가치 또는 원가의 측정은 반덤핑과 반독점 분야에서 현저히 다르다. 비록 법 집행자들이 수출국에 매우 익숙하더라도 반독점법 집행자는 조사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직면할 것이다. 약간의 어려움은 많은 덤핑사건에서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은 아니며, 특히 문화와 사회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경쟁으로 반덤핑법을 대체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상당히 성립된 것이다. 정도의 일체화 이상의 것은 그렇다고

23) 劉遠震, “論我國反傾銷的現狀及對策”, 世界經濟研究, 2015, pp.11-15.

24) Ronald A. Cass,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ion Analysis in Antitrust and International Trade: A Comment”,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LX I, 1993, p.877, p.880.

해서 경쟁법의 조작이 반덤핑의 실행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²⁵⁾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반덤핑 제도와 규범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관련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는 적은 편인데 반덤핑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조일림·김희철(2018)에서는 한·중 양국의 반덤핑 규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두 나라의 반덤핑 규정에서 절차상이나 조사기간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종료재심사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원만한 재심사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재심사 절차에서는 그 신청서 접수로부터 재심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데 덤핑방지관세의 징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장기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⁶⁾

김용길(2016)에서는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관련된 법령들을 연구하며 문제점을 분석해서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 반덤핑법 체계의 복잡성과 관련된 반덤핑법이 개편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반덤핑 관세금액과 관련된 내용과 재심사 결정에 복잡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사법심사나 행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해 구체적인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이익에 대해 중국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덤핑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오문갑(2014)에서는 중국 반덤핑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은 반덤핑과 관련된 법령이 20개 정도가 있으며 이 법령들은 한결같지 않고 또한 그 규정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뿐

25) 周曙東·吳方衛, “國際貿易中戰略性貿易保護的博弈分析—兼談反傾銷·特別保障措施和綠色壁壘”, 世界經濟研究, 2016, pp.26-28.

26) 조일림·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8, pp.9-15.

27) 김용길,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6, pp.15-37.

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중국의 반덤핑 조사인력의 전문성이나 인력 수도 많이 부족하고 관련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는 자국의 내부 규정에 반덤핑 운용절차가 맡겨져 있어 투명성 부족의 문제도 있으며, 조사를 단계 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장 18개월로 규정만 하고 있어 피소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⁸⁾

朱玉榮(2013)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현상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반덤핑조치가 중국 수출제품의 수출 억제에 대해 큰 효과가 있었고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반덤핑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전 작업 준비를 잘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자국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⁹⁾

박형래(2012)는 중국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판정조치가 어떠한 산업피해 판정 원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증명하여 통상정책 운용에 시사점을 제언하였다.³⁰⁾

최석범(2010)에서는 반덤핑 제도의 절차법규정과 실체법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기준과 근거가 결여되기 때문에 중국 사법심사제도 및 WTO 제소 등을 활용해서 법 집행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본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며 또한 대외적인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이익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더불어 중국은 반덤핑 조치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제도도 구축해야 하며, 대외적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馬光(2007)에서는 반덤핑 종료재심사와 관련하여 WTO와 중국, EU, 미국, 한국, 인도 등 주요국의 법령 및 관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반덤핑 협정에 대한 개선 방

28) 오문갑, “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1호, 2014, pp.48-52.

29) 朱玉榮, “韓國反傾銷措施對中韓貿易的影響分析”, 對外經貿實務編號, 2013, pp.36-47.

30) 박형래, “국가별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제소 결정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2, pp.22-36.

31) 최석범,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3호, 2010, pp.20-37.

향을 제시하였다.³²⁾

이재규·손성문(2006)에서는 중국 측의 입장은 2001년 11월 개정된 반덤핑 조례 및 2004년 새롭게 개정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또한 이에 관한 특징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한계점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체계적 법률입법이 아니라 반덤핑조례가 규범적으로 체계적인 한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경제국 및 비시장경제국의 대체 국가 선정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우회 수출방지에 관한 세부 규정이 결여되고 하였다.³³⁾

<표 2-1>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분	내용
조일린 · 김희철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한·중 양국의 반덤핑 규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두 나라의 반덤핑 규정에서 절차상이나 조사기간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종료재심사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원만한 재심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연구의 내용: 한국과 중국 반덤핑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원만한 재심사 제도의 운영을 재심사 절차에서는 그 신청서 접수로부터 재심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데 덤핑방지관세의 징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장 기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사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용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대외무역 중의 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 체계를 살펴보고 또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기업에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연구의 내용: 우선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 반덤핑법 체계의 복잡성과 관련된 반덤핑법이 개편, 그다음 반덤핑 관세금액과 관련된 내용과 재심사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32) 馬光,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문집, 제52권 제1호 (통권 제107호), 2017, pp.22-27.

33) 이재규·손성문,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2006, pp.33-36.

		만 사법 심사나 행정심사를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구체적인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그리고 공공이익에 대해 중국은 명확하게 규정, 마지막으로 반덤핑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문갑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세계통상질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주요 특징,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의 내용: 중국은 반덤핑 법령이 20개 정도가 있고 이 법령들은 한결같지 못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규정 중에서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중국의 반덤핑 조사인력의 전문성이나 인력수도 많이 부족하고 관련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는 자국의 내부 규정에 반덤핑 운용절차가 맡겨져 있어 투명성 부족의 문제도 있으며, 조사하고 있어 피소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朱玉荣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중국에 대한 한국 반덤핑 현상을 분석을 통해 중국 기업들에게 도움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의 내용: 첫 번째는 반덤핑 제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전 작업 준비를 잘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자국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행래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중국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판정조치가 어떠한 산업피해 판정 원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증명하여 통상정책 운용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의 내용: 국가별 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제소 결정.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통해서 중국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판정조치 운용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중국 반덤핑제도의 절차법규정과 실제법규정을 연구하여 이에 의해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의 내용: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집행

	최석범 (2010)	<p>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기준과 근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법심사제도 및 WTO 제소 등을 활용해서 법집행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본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며 또한 대외적인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이익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반덤핑 조치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제도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외적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
	馬光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반덤핑 종료재심사와 관련하여 WTO와 중국, EU, 미국, 한국, 인도 등 주요국의 법령 및 관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반덤핑협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연구의 내용: WTO와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 재심사 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WTO반덤핑협정 재심사제도는 크게 행정 재심사와 사법재심사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재규 · 손성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중국 측의 입장에서 2001년 11월 개정된 반덤핑조례 및 2004년 새롭게 개정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또한 이에 관한 특징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 연구의 내용: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 및 그 한계에 대한 고찰에서 주요 한계점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체계적 법률입법이 아니라 반덤핑조례가 규범적으로 체계적인 한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경제국 및 비시장경제국의 대체 국가 선정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우회 수출방지에 관한 세부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과 같이 중국 관련된 반덤핑 규정 및 조사절차 등에 대해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단편적으로 통상법적 규정의 내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거나 조사절차에 관한 단편적인 부분만을 연구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규정에 관한 사례연구에 대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 반덤핑의 발생 원인과 이와 관련된 대책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한·중 반덤핑 제도 및 분쟁

제1절 한·중 반덤핑 제도

1. 한국의 반덤핑 제도

1) 반덤핑 제도의 정립 과정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제도는 1963년 12월 5일에 관세법 개정했을 때 ‘부당하게 염매된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업을 보호하기 필요할 때에는 정상 도착 가격 및 부당 염매 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당 염매 수입에 관한 관세 부과는 부당 염매 및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GATT 제6조 제1항이 규정되어 있는 덤핑 결정,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덤핑 및 피해의 인과관계 등 덤핑 방지 관세의 조사절차와 부과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덤핑 방지 관세 제도가 GATT 제6조의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으로 틀을 가진 것은 1983년 12월에 관세법의 전면 개정이었으며, 이때는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요건을 GATT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신청인, 덤핑 및 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 기간 등, 1979년에 반덤핑 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한 절차들이 도입되었다.³⁴⁾

더불어 덤핑과 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는 관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지만 이를 위하여 그 아래의 산업피해 조사반 및 가격 조사반을 해산하였으며 산업 피해 조사는 관련 부처직원이 담당하고, 가격조사는 관세청 직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재무부장관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사신청의 기각과 조사의 종결, 약속 수락, 그리고 잠정조치 등의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 후에 한국은 1986년 2월 24일에 GATT 반덤핑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국내법을 통해 협정내용 입법화함을 본격적으로 반덤핑 제도에 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

34) 姜棟, “韓國反傾銷法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5, pp.36-38.

다. 1986년 4월에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에서 발동요건인 덤핑수입, 인과관계, 국내 산업피해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조사신청, 잠정조치, 조사 절차, 가격약속 제의와 수락, 조사개시, 기각, 종결과 같은 절차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였다. 특히, 관세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조사개시 여부는 3개월,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는 6개월, 또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검토기한은 각각 3개월로 규정하여 전부 12개월 안에 조사가 종결되도록 규정하였다.³⁵⁾

하지만 반덤핑 제도를 운용해 본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보통 18개월이 소요되며, 잠정조치에 대한 규정이 결여됨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1992년 12월에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조사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며 조사기간도 단축하였다. 그 결과에 의해 조사개시 여부는 재무부 장관이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하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기한은 각각 3개월로, 덤핑방지 관세 부과 검토기한은 1개월로 규정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덤핑수입과 산업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잠정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 덤핑조사는 관세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³⁶⁾

그 후에 무역구제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및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반덤핑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여론이 팽팽해짐에 의해 1993년 12월에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덤핑방기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의 장관으로 낮추고, 한편으로 재무부에서 조사신청서의 접수 및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권한을 무역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더불어 종전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 운영규정(재무부 고시)'을 폐지하며 동 고시에서 대부분 규정한 덤핑 및 피해요건과 조사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서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 결정, 재심사, 산업피해, 약속, 덤핑률 산

35) 김철수, "WTO 반덤핑협정상 구성가격산정방법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7권 제6호, 2017, pp.19-27.

36) 王傳麗, "國際貿易法", 法律出版社, 2017, pp.13-23.

출 등 반덤핑조사절차와 적용기준을 협정의 내용과 일치시켰다. 특히 변화된 무역 환경하에서 효과적으로 반덤핑조사를 운영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5년 12월에 관세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며 관세청에서 덤핑 조사업무를 무역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조사기관으로의 무역위원회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무역위원회가 재정 경제 장관에게 잠정조치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부과 기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통해 조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하였고 가격약속 의견도 무역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996년 5월에 재정경제원은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며,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간소화하였다. 1997년 12월에 덤핑률 산정 시 판매조건, 판매 수량, 물품의 물리적 특성 외에 거래단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성가격 산출기준을 규정하는 등 WTO 반덤핑 협정을 구체화하였다.³⁷⁾

2000년 12월에 덤핑률 산정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정할 때 현재 혹은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이나 일회성 비용 등을 조정해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공청회 개최의 날짜 및 장소는 30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며 신청인 및 이하 관계인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01년 6월에는 ‘무역위원회 공청회 운영에 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마련해 공청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조사 질의서 발송에 대한 사항, 이해관계인 회의, 영업비밀 자료의 취급, 재심에 대한 규정 등을 규정한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 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더욱 제고하였다.³⁸⁾

2) 반덤핑 제도의 운영 메커니즘

한국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산업피해 구제기관은 무역 위원회이고, 반덤핑관세부과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

37) 戴仲川, “中韓反傾銷法若干問題比較研究”, 中國新華出版社, 2017, pp.36-40.

38) 조영진, “WTO 반덤핑협정 상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 pp.21-24.

는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71조, 그리고 불공정 무역행위조사와 산업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은 제23조 등에 두고 있다.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 등을 겪은 국내 산업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혹은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만 신청자격이 있고 무역위원회로 실질적 피해 등 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조사신청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산업피해 등이 경미해 관세 부과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덤핑 혹은 피해 등의 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아상의 하나만 있더라도 무역위원회가 신청서를 거부할 수가 있다.³⁹⁾

무역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예비조사와 판정, 본조사와 판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은 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쌍방 당사자들의 답변서를 분석하며 현지 조사함을 통해 쌍방 당사자들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것이다.

한국 반덤핑은 대체적으로 WTO 이행협정에 준거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국 및 EU의 반덤핑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적 면에서 봤을 때 한국 반덤핑에서는 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반덤핑과 관련된 조사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가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건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후 세관이 반덤핑관세를 시행하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덤핑의 조사와 확정 은 무역위원회 산하의 덤핑조사팀에서 담당하며, 피해의 조사와 확정은 산업피해조사팀에서 담당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사실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9명의 위원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⁴⁰⁾

39) 고준성, "WTO체제이후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 평가 -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7, pp.08-17.

40) 吳淸津, "WTO 反傾銷規則",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17, pp.46-49.

(1) 조사 신청

"반덤핑조사절차는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조사신청에 의해 개시되고, 그 신청은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신청 혹은 무역위원회에 관한 조사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반덤핑조례」제59조)."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 있는 자란 실질적 피해 등을 받는 국내 산업을 포함하는 국내생산자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반덤핑조례」 제59조)." "신청인은 이해관계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국내 산업을 대표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사신청을 받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반덤핑조례」 제 59조)."

(2)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1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면, 10일 안에 조사대상 물품 및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을 확정하고 공고한다. 무역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물품의 국내 동종물품 및 이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조사 신청일을 포함한 연도 직전 3년부터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한다.⁴¹⁾

(3) 예비조사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해 조사개시 결정을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필요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한 기간 내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 사실이 있다고 판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반덤핑조례」 제61조)."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 예비조사에 의해 덤핑차액이 국내 수입량의 7% 미만이거나 덤핑가격의 2% 미만의 경우, 혹은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본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반덤핑조례」 제61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반덤핑조례」

41) 傅東輝, “論貿易救濟”, 中國法制出版社, 2018, pp.11-19.

제59조)."

(4) 본조사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 조사를 실시하며, 덤핑상품의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의 존재, 그리고 위 양자의 인과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조사개시 발표일로부터 3개월(2개월 안에서 연장 가능) 안에 예비 조사를 거쳐서 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한다(「반덤핑조례」 제59조)."

가) 덤핑조사

덤핑조사는 제품이 정상가격의 이하로 수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덤핑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는 절차이며,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거래단계(공장도 단계)에서 거래량 및 가격을 원칙적으로 가중평균법으로 대비한다.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환율변동, 판매조건, 거래단계의 차이, 과세의 차이, 판매 수량 등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서 조정된 뒤에 비교해야 한다. 이때 조정된 정상가격은 조사대상국에서 공장 가격으로 통상 거래되는 정상가격에 환원한 가격이고, 조정된 덤핑가격은 공장 가격으로 조사대상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에 환원한 가격이다.

만약에 덤핑마진이 덤핑가격의 2% 부족하거나 수입점유율이 각각 3% 이하인 공급국들로부터의 점유율 합산이 동종물품 수입량의 7%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조사를 종료할 것이다.⁴²⁾

나) 피해조사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이 국내 산업에 끼치는 실질적인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 염려 혹은 그런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하는지를 추정한다. 또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덤핑수입이 조사대상 기간 안에 국내 산업에 끼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영향을 검토한다. 덤핑수입의 물량이 국내 생산 혹은 소비에 비해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덤핑제품에 대한 수입물량), 덤핑수입의 가격이 국내 같은 종류의 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거나 가격인하를

42) 唐宇, “反傾銷法理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8, pp.28-29.

초래하였는지 (덤핑제품의 가격), 덤핑제품의 수입가격이 덤핑수출국 안에서 정상 가격과 비교하면 뚜렷이 하락하였는지를(덤핑차익의 정도) 논의한다.⁴³⁾

1)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가 산업피해에 대해 긍정판정일 경우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본 조사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한 달 안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조치를 채택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 혹은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혹은 기준 수입가격을 정해서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 정해진 덤핑마진이 미국의 반덤핑관세율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상을 과 덤핑마진을 비교해서 덤핑 방지관세율을 결정한다.

이는 GATT 이행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덤핑수입으로 초래한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피해의 구제수준이 조사된 덤핑률과 비교하여, 낮으면 이러한 구제수준을 덤핑방지관세율로 하는 것이다.⁴⁴⁾

2) 반덤핑 조치의 종료 및 재심사

반덤핑 관세의 부과조치 혹은 가격 약속은 그 적용시한을 총리령으로 따로 확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재심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 이상, 변화된 내용의 시행일로부터 5년 후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사는 반덤핑관세부과 확정한 뒤 합리적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해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 of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심사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혹은 가격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 지난 후부터 덤핑방지관세 혹은 가격약속의 효력이 없어지는 날의 6개월 이전에는 가능하다.

재심사에 대한 요청요건은 조치(덤핑방지관세 혹은 가격약속)를 시행한 후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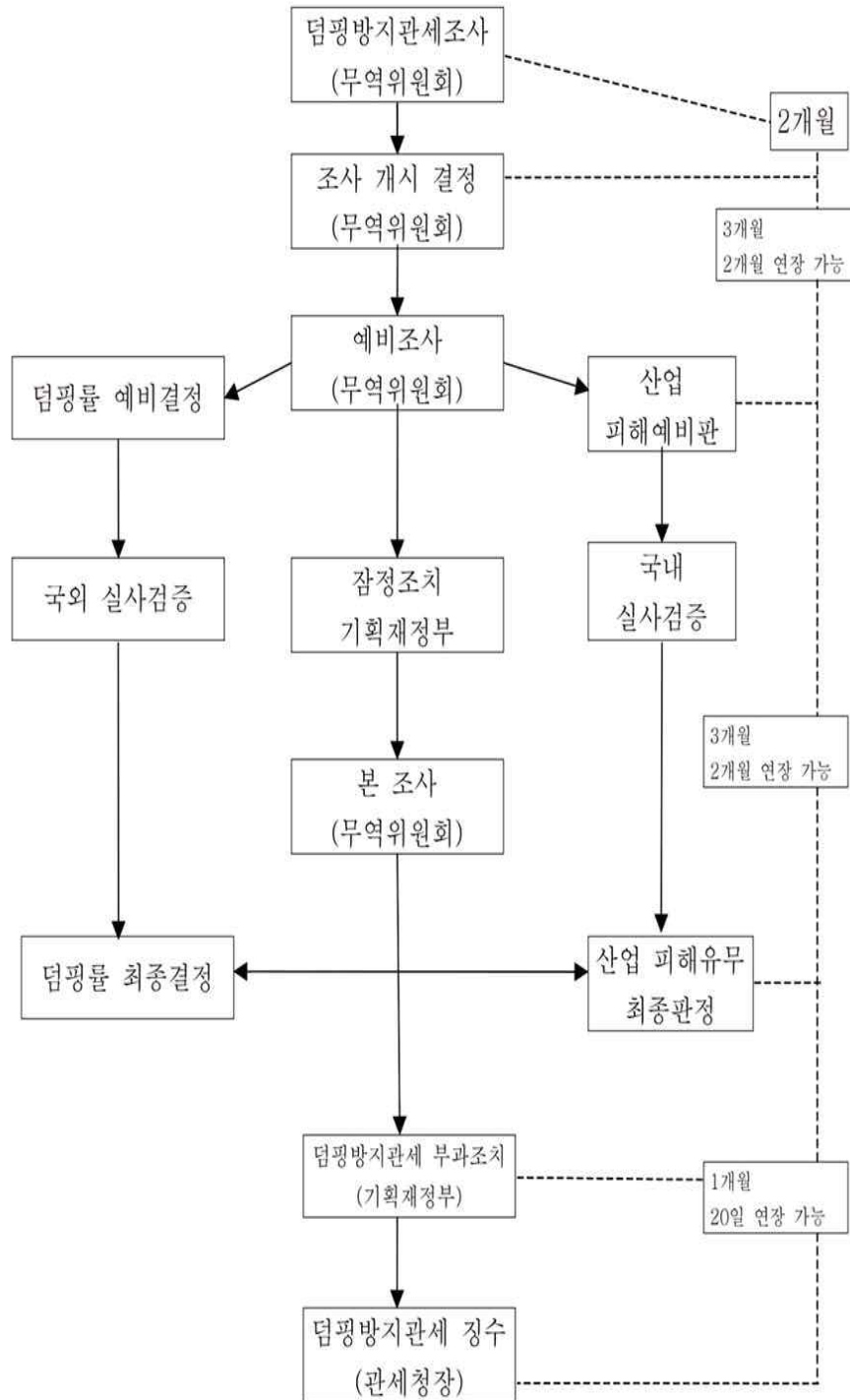
43) 叶波, “反傾銷法理選析”, 法律出版社, 2016, pp.17-29.

44) 朱廣東, “國際貿易救濟法律問題研究”, 東南大學出版社, 2017, pp.22-24.

조치의 내용변경은 필수적으로 상황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상황변동 재심사), 조치의 종료로 인해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종료 재심사), 실제 덤핑차액과 비교하면 덤핑방지관세액을 과하게 납부되는 상황(환급 재심사)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심사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종결하며, 재심사 결과를 제출받는 날짜로부터 한 달 안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료 재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 동안 조치가 만료되면 재심사 기간 안에서의 조치의 효력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재심사는 원심덤핑 조사 절차에 준해서 업체별, 국가별 검토를 원칙적으로 하고, 반덤핑 조치 전후의 수출 물량의 변화, 수출가격 및 기타 경제여건 변화 추세를 조사한다. 다시 재심사 덤핑률을 산정할 때 원칙 혹은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 덤핑률을 적용한다.⁴⁵⁾

45) 褚霞, “貿易救濟性質研究”, 法律出版社, 2018, pp.17-39.



<그림 3-1> 한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도

자료: 무역위원회

2. 중국의 반덤핑제도

1) 반덤핑제도 성립 과정

중국의 대외무역은 1978년 개혁개방 후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수출입 총액 순위는 1978년의 43위에서 1997년의 10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무역대국의 행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수출 물품은 저가 원자재 및 값싼 노동력 등 원인으로 인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많은 수량으로 외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전력은 외국과 관련된 산업으로부터 저지를 당하게 되어서 반덤핑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79년~1998년 사이에 중국제품은 외국에서 총 327건의 반덤핑조사를 받았고, 또한 대부분 일반적인 무역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8년에 GATT 설립했을 때 중국은 23개 초기 가입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GATT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다.⁴⁶⁾ 이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⁴⁷⁾에는 경제개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소극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외국상품들이 급속한 수입증가로 인해 외국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속적인 반덤핑 제소로 인해 중국의 국유기업 및 대기업들은 자국에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94년 이후 6년 만인 2000년에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전체의 액수가 2,000억 불로, 지난 90년대 중국의 대외수출 무역의 평균 상승률이 14.5%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재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 수출입 상승 속도의 두 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이었다.⁴⁸⁾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국 내 기업 보호와 외국의 반덤핑 제소를 제한하기 위해서 1994년 4월 4일에 외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대해 응소할 수 있는 규칙을 발표하였다.

1994년 5월 12일에 개최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제7차 회의에

46) 唐宇, “論反傾銷規則的弊端与改革”, 東北財經大學出版社, 2016, pp.09-18.

47) 1966년-1976년 10년 동안 중국의 최고지도자 毛澤東에 의하여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운동이다.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대중운동이었고 그 힘을 빌어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대세력들 제거했다.

48)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http://www.mofcom.gov.cn/>

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 무역구제제도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대외무역법 제30조에 따라 덤핑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이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어서 국내에서 이미 설립된 유관산업에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의 위험을 조성하거나 국내의 유관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저해를 조성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피해 및 피해위협이나 실질적인 저해 등을 경감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반덤핑조치의 일반적인 아웃라인만 제시하였을 뿐,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혹은 구제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는 모호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적용하지 못해 왔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1994년에 대외무역법을 반포한 후 1997년에 반덤핑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단 한 건의 반덤핑조치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국은 WTO에 가입했을 때 합의사항인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규정을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 26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조금 조례’,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를 국무원령으로 통과시키며 2002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1년에 반덤핑조례의 공포와 같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2년 2월 10일에 ‘반덤핑 조사개시 잠정규칙’을 발표하였고, 2002년 3월 13일에 ‘반덤핑 가격약속 잠정규칙’, ‘반덤핑 신규 수출자재심 잠정규칙’, ‘반덤핑 설문조사 잠정규칙’, ‘반덤핑 조사 공개정보열람 잠정규칙’, ‘덤핑 및 덤핑마진 중간재심 잠정규칙’, ‘반덤핑 표본조사 잠정규칙’, ‘반덤핑 조사정보공개 잠정규칙’, ‘반덤핑 현지조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환급 잠정규칙’ 등 무려 10 개에 이르는 잠정규칙들 및 2003년 10월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2002년 12월의 ‘산업피해 조사 공청회규칙’, 그리고 2002년 11월의 ‘반덤핑 행정사건 심리규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⁴⁹⁾

또한 중국은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 시행규칙’, ‘반보조금 질의서조사 잠정 시행규칙’, ‘반보조금 조사 현장조사 잠정시행규칙’, ‘반보조금조사개시 잠정시행규칙’ 등 반보조금에 관련된 4건의 시행세칙 및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잠정시행규칙’, ‘세이프가드 조치 상품범위 조정절차 관련 잠정시행규칙’, ‘세이프가드 조사공

49) 袁磊, “反傾銷會計”, 北京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18, pp.27-29.

청회 규칙' 등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된 3건의 시행세칙을 제정공포해서 중국무역 구제와 관련 조례의 원칙적 규정을 대거 보완하였다. 중국국무원은 2004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의 제2차 개정안을 확정 및 공표하며 같은 년 6월 1일자로 실시에 들어갔다.⁵⁰⁾

2) 반덤핑제도의 운영 메커니즘

중국에서 반덤핑과 관련한 조사는 상무부가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에 건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관련 공고를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관은 세관(海關)이다. 또한, 만약에 가격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전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덤핑의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 산하의 수출입 공평무역국에서 담당하며 피해의 조사와 확정은 산업피해조사국에서 책임진다. 단지 농산물과 연관된 반덤핑사건의 피해조사는 농업부와 같이 실시한다. 반덤핑조례의 전부 조항은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를 규율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상무부가 판단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결정을 내리고, 만약에 상무부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조사절차가 불법적이거나 혹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가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⁵¹⁾

2003년 4월 26일에 국무원 사무청(國務院辦公廳)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구성원과 주요직책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였는데, 공지에 의하면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의사협조기관으로 주요직책은 연도 잠정세율·세관 관세세율·특별관세·관세 쿼터세율(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포함)의 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며, 수출입 세칙번호에 관한 수정방안을 결정하고, 국가에서 세칙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연관된 방안을 마련하며, 국무원에 보고할 중요한 관세정책

50) 沈木珠, “我國應對國外反傾銷與我國加強反傾銷”, 北京經濟科學出版社, 2018, pp.38-40.

51) 陶艷娟, “淺論反傾銷會計的理論結構”, 新華出版社, 2014, pp.16-18.

및 대외관세협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사실상 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주로 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최근 들어서 그 산하에 새로 설립한 관세사에서 반덤핑관세와 동일한 특별 관세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 검토를 하고 있다.⁵²⁾

(1) 조사신청

조사는 상무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를 실행하는 신청인에 따른 조사와 상무부가 조사개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두 가지의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신청인에 따른 조사의 경우, 제조당사자의 자격에 대해 국내산업 혹은 국내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인, 관련 조직, 법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덤핑조례」 제13조)." "조사신청서에 따르면 첫째,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기타 관련 상황. 둘째, 조사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설명. 셋째,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수량 또한 가격이 국내 사업에 끼치는 영향. 넷째, 조사 대상 수입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 또한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기타 내용 등이 포함되야 한다(「반덤핑 조례」 제15조)." 그리고 신청인은 조사대상 수입제품의 덤핑사실, 국내 산업에 관한 피해 또한 덤핑과 피해 간에 있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구비해 신청서에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반덤핑 조례」 제15조)."

(2) 조사개시

상무부는 신청서와 관련된 증거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개시를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발표 이전에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이를 발표해야 한다. 조사에 응하는 이해당사자는 조사개시 발표일로부터 20일 안에 상무부에서 응소신청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는 조사 신청인, 이미 알려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수출국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조직을 통칭한다.

덤핑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 개시하기 전의 3~5년이다. 덤핑조사는 조사개시 결정 및 발표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52) 尤宏兵, 劉卓林, “中國應對傾銷与反傾銷”, 人民出版社, 2017, pp.09-16.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장하되,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무부는 현장조사, 표본추출, 공청회, 질의서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며 조사를 실행한다.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며 논거를 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⁵³⁾

(3) 1심 판정 및 잠정 반덤핑조치

WTO 반덤핑협정은 예비판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을 따른다. 중국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심 판정까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1심에 관한 규정은 반덤핑조례 및 산업피해조사규칙에 명확히 표시되고 있다.

상무부는 1심 판정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덤핑으로 인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인정되는 판정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잠정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잠정 반덤핑 조치에서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및 보증서, 현금 보증금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의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잠정 반덤핑조치는 조사개시 결정 발표일로부터 60일 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잠정 반덤핑조치의 수행기한은 잠정 반덤핑조치 결정 발표에서 규정한 일자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9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반덤핑 가격약속 규칙 제3조에 따라 1심 판정 공고한 후 45일 안에 조사대상 수출업자 혹은 생산자는 가격약속을 상무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수출업자 혹은 생산자에게 가격약속을 권고하기가 가능하다. 1심 판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지기 전 가격약속 요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가격약속을 권고해서는 안 된다. 가격약속은 반덤핑조사 중지 혹은 종결 결정 발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유효기간은 5년이다.⁵⁴⁾

한편으로 상무부는 1심 판정 발표일로부터 20일 안에 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덤핑과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근거한 기본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또한 각각 이해관계자는 공고와 통보내용에 대해 최소 10일 안에 서면 논평을 상무부에게 제기해야 한다.⁵⁵⁾

53) 翁國民, “貿易救濟體系研究”, 法律出版社, 2017, pp.43-46.

54) 劉遠震·彭劍波, “論我國反傾銷的現狀及對策”,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5, pp.22-26.

55) 卓駿, “反傾銷預警系統研究”,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18, pp.19-22.

(4) 본 조사

중국의 본 조사는 덤핑조사와 피해조사 두 부분으로 분류하여 동시에 진행한다.

가) 덤핑조사

상무부 수출입 공평무역국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공고하고,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입자와 수출자, 수출국(지역)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 조직들과 개인에게 통보한다. 조사기관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조사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비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비밀 특징을 지니지 않는 부분은 요약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조례 제6조는 덤핑마진 계산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가중 평균가격 비교방식,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 가중평균가격 및 개별수출가격 비교방식이 있다. 가중평균가격 비교방식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전부 비교할 수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해서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거래가격의 비교방식은 각각의 거래 기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중평균가격 및 개별수출가격의 비교방식은 수출가격의 구매기간, 구매지역, 구매자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앞의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시 가중평균 정상가격 및 개별거래 가격을 비교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⁵⁶⁾

나) 피해조사

반덤핑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덤핑이 국내 산업에 초래하는 피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써 덤핑 수입품의 가격, 덤핑수입의 수량, 덤핑수입이 국내 산업과 관련된 경제 요소와 지표에 끼치는 영향, 수출능력 및 재고 현황, 수출자의 생산능력, 국내 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다른 요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피해 조사방식에 관한 규정은 반덤핑 조례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걸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산업피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표본추출, 증언청취, 기술 감정,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 설문조사 규칙」에 의해 설문답변 제출기간을 발송일

56) 苑濤, “反傾銷的經濟影響：對中國的分析”. 北京：人民出版社, 2017, pp.07-18.

로부터 37일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무부가 동의하면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 표본추출 규칙」에서 표본추출 조사를 생산업자·수출업자의 표본조사, 거래의 표본조사, 그리고 상품유형의 표본조사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본추출 시 확보가 가능한 정보에 기초해서 유의미한 추출방식을 통계학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수출물량에 의해 조사 표본을 선택하되 선택된 조사 표본은 대표성을 가질 것 등을 규정한다. 「반덤핑 현장조사 규칙」에 따르면, 업무인력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해당 수출국에 파견해서 관련된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가 제출한 정보와 자료의 사실성 및 정확성, 또한 완전성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다. 반덤핑공청회 규칙에 의하면 이해당사자가 개최요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상무부는 15일 안에 개최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⁵⁷⁾

(5) 덤핑방지관세 부과

상무부는 마지막 판정을 내리기 전 최소 10일간의 반론 기한을 두며 최종판정할 때 근거로 한 기본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부 통보해야 한다. 본 조사 결과에 따라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는 반덤핑 조치를 취함으로 종료된다. 부정판정의 경우에는 이미 예치된 현금 보증금, 부과된 잠정 반덤핑관세는 환급해야 하고, 은행보증서 혹은 기타 형식의 담보는 해제해야 한다. 가격약속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상무부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게 반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하며 이 건의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정하면 그 내용을 상무부가 통지해야 한다. 반덤핑관세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최종판정 결정 공고일이 지난 후에 수입한 제품에 사용된다.⁵⁸⁾

57) 陳明聰, “經濟全球化趨勢下反傾銷的法律問題”,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2018, pp.21-28.

58) 李勝敬, “國際反傾銷應訴和申訴操作指南”, 法律出版社, 2014, pp.36-38.

(6) 반덤핑조치 종료 및 재심사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심사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종지가 덤핑 및 피해의 계속적 혹은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혹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반덤핑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에 대해 중간재심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해당관계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재심사 절차는 반덤핑 조례의 조사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재심사 기한은 재심사 통지 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⁵⁹⁾

(7) 일몰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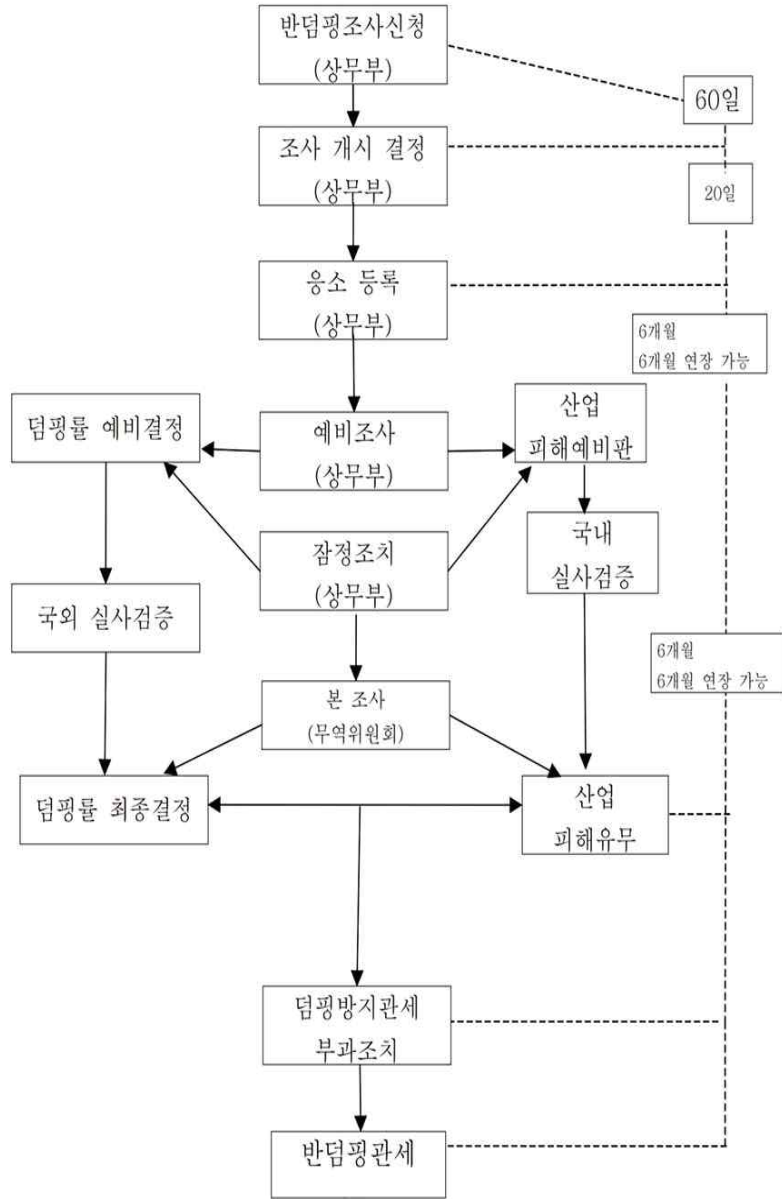
일몰재심이란 반덤핑조치를 실시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반덤핑조치를 종지할 경우에는 덤핑 혹은 산업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판정하여 반덤핑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중국의 반덤핑규정에 따라 일몰재심에 대한 규정이 반덤핑조례 제48조에 명시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 혹은 절차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일몰재심과 관련된 판정을 살펴보면, 상무부는 덤핑의 계속 혹은 재발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는 덤핑마진의 존재 여부와 수출국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가동률, 조사 대상국 내의 수급상황을 조사해서 반덤핑조치를 종료한 후 중국으로 대량수출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제3국에 관한 저가 수출여부를 조사해서 조사대상 수출기업의 저가 전략 여부도 고려하였다.

더불어 산업피해의 계속 혹은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후에 국내산업 피해지표를 조사하였고, 반덤핑조치를 종료할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 관한 피해 발생 가능성(가격 예상, 시장공급량, 수입량, 명목소비량, 미래 중국 내 수급 예상)을 조사하여 판정하였다. 일몰재심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활용한 판정이 내려진다.⁶⁰⁾

59) 王培志, “對外貿易中的反傾銷對策問題研究”, 經濟科學出版社, 2015, pp.19-24.

60) 孫錚·劉浩·李琳, “貿易救濟會計”, 北京經濟科學出版社, 2018, pp.46-48.



<그림 3-2> 중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도

자료: 무역위원회

3. 한·중 양국의 반덤핑 제도 비교

1) 한·중 반덤핑 제도 비교

덤핑조치 수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반덤핑 조치의 주요 목적이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 원칙적으로 확정 반덤핑 조치의 존속 기간은 부과일로부터 혹은 이에 대한 제일 최근의 심사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종료 재심사의 중요성이 그 정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료 재심사의 중요한 요건은 손해와 덤핑 발생 가능성 및 다시 발생할 가능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대해 WTO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종료 재심사와 연관된 심사 대상 및 표준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⁶¹⁾

(1) 덤핑 및 손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

한국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혹은 약속의 종료로 인해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종료 재심사의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료 재심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덤핑과 손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야기할 확률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가 종료 재심사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피해 종결에 관한 고려 요소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⁶²⁾

(2) 한·중 반덤핑 조사 업무 처리 절차

가. 한국의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한국의 반덤핑조사 신청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사개시 여부를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조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와 관련된 조사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종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⁶³⁾

61) 顏延, “法律背后的會計理念－從反傾銷法涉及的會計問題看會計對法律的影響”, 北京經濟科學出版社, 2017, pp.13-16.

62) 高永富, 張玉卿, “國際反傾銷法”, 復旦大學出版社, 2017, pp.39-42.

63) 于永達·李振中·吳金希, “反傾銷案例”, 清華大學出版社, 2016, pp.56-60.

나. 중국의 반덤핑 조사 및 업무의 진행 절차

조사개시는 중국 상무부가 국내 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에 관한 요청이 접수될 때, 제소장 내용 및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상무부는 덤핑 및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예비판정을 하고 게시한다. 상무부의 덤핑과 산업피해에 관한 최종판정은 조사개시 일로부터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안에 이루어지며 결과를 통보한다.

중국의 반덤핑조례에 의해 반덤핑제고의 운용기관은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와 상무부가 있다. 또한, 위의 그림에 따라 중국 반덤핑제도 운용에 제일 핵심 기관은 바로 상무부이고, 중요한 반덤핑조사와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⁶⁴⁾

2) 한·중 종료 재심사 제도상 절차 비교

(1) 신청사유 및 당사자

한국 반덤핑 조치의 원심 조사 경우에는 무역위원회가 신청서 접수로부터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서 작성 및 조사개시 여부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반덤핑조치 재심사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및 조사개시 검토, 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재심사 개시 건의 여부의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사 개시의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 중국 반덤핑조치 이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덤핑관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필요성에 관한 재심사를 실시할 것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가격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승낙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에 관한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내릴 수 있다. 합리적인 시간을 초과한 후 이행관계자가 제공된 관련 증거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를 심사하여 가격승낙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에 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조사기관의 직권으로 중국의 반덤핑 재심사 절차는 권할 수 있다.⁶⁵⁾

64) 李艷燕, “國際貿易概論”, 西南財經大學出版社, 2010, pp.39-48.

65) 于永達, 戴天宇, “反傾銷理論與實務”, 清華大學出版社, 2016, pp.39-45.

(2) 신청기간

한국법에 의하면 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일 혹은 약속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실시할 수 있고, 덤핑방지관세 혹은 약속 효력이 없는 날의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필요여부를 결정해서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와 공급자, 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발표해야 한다. 중국의 반덤핑제도 중에 이와 관련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관련 규칙과 세부지침 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신문용지 사건에 의해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원래 반덤핑조치 종료기간(2003.07.09.)이 되기 전에 2002년 12월 31일 약 6개월 전에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는 공고를 게재할 날로부터 국내 산업이 원래 반덤핑조치가 종료되기 60일 전 재심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폴리염화 비닐 사건에서는 조사기관은 반덤핑조치 종료기간(2008.09.29.) 8개월 전, 즉 2008년 1월 15일에 공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공고를 게재할 날로부터 중국 국내 산업이 원래 반덤핑조치가 종료되기 90일 전 조사기관에게 재심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⁶⁶⁾

(3) 재심사의 실시

한국법에 의하면 재심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면 무역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고,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사유가 되는 부분에 제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적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 4개월 이내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의 반덤핑제도에서는 재심사 기한은 재심사 결정 시행일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재심사 기간 및 재심사 절차는 반덤핑조치 실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은 재심사의 조사 절차상에는 각 반덤핑제도에 따라 설문조사, 표본 추출, 현장 조사, 공청회 등 방식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66) 黄岩君, “中國反傾銷實踐指南”,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14, pp.24-26.

한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재심사를 할 수 있고, 관세법 제54조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의해 수락된 약속은 적용시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며, 그 결과에 의해 내용을 변경하면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중국의 반덤핑제도에서는 덤핑방지관세 징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장 기한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다.⁶⁷⁾

제2절 한·중 양국의 반덤핑 분쟁 현황

1. 한·중 무역 현황

<표 3-1>은 200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국 대(對)중국 무역수지통계이다. 한국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 후 2005년부터 2015까지 6.6배의 속도로 급격한 증가세로 보이고 있다. 2015년 이후에 증가세를 점차 줄어들이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인다.

67) 劉華, “反傾銷實踐的新動向”, 中國商務出版社, 2016, pp.36-40.

<표 3-1> 한국의 대(對) 중국 무역수지

(단위:천불)

순번	년도	수출	수입	수지
1	2020년(0-5월)	884,994,582	769,651,829	115,342,753
2	2019년	2,497,951,835	2,060,785,481	437,166,354
3	2018년	2,488,544,077	2,117,142,583	371,401,494
4	2017년	2,279,162,136	1,789,999,733	489,162,402
5	2016년	2,134,872,317	1,522,886,366	611,985,951
6	2015년	2,280,437,122	1,601,598,427	678,838,694
7	2014년	2,343,222,126	1,963,105,197	380,116,929
8	2013년	2,210,771,856	1,941,465,999	269,305,857
9	2012년	2,050,109,239	1,817,344,026	232,765,213
10	2011년	1,899,314,102	1,741,624,120	157,689,981
11	2010년	1,578,444,201	1,393,909,267	184,534,934
12	2009년	1,202,047,365	1,003,892,748	198,154,617
13	2008년	1,428,869,189	1,131,468,686	297,400,503
14	2007년	1,218,155,477	956,261,491	261,893,986
15	2006년	969,323,615	791,793,900	177,529,715
16	2005년	762,326,760	660,221,766	102,104,994
17	2004년	593,647,174	560,811,175	32,835,999
18	2003년	438,472,557	413,095,616	25,376,941
19	2002년	325,642,067	295,302,905	30,339,162
20	2001년	266,661,113	243,567,050	23,094,064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년 5월까지)

한국의 대(對) 중국 무역흑자통계 <표 3-2>를 살펴보면, 2015년에 72,860백만 불에 도달하였고 2016년 63,015백만 불로 다소 감소한 후에 2017년부터 74,330백만 불로, 2018년까지 95,595백만 불로 급격한 증가세로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은 62,568백만 불로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발23,075백만 불밖에 안 된다.

<표 3-2> 한국의 대(對) 중국 무역흑자액

(단위: 백만불)

년도	적자액
2020	23,075
2019	62,568
2018	95,595
2017	74,330
2016	63,015
2015	72,860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년 5월까지)

<표 3-3>을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 무역 수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모두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 중국은 한국 무역 수출의 비중은 25.1%로 차지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4.2%, 24.5로 나타났다. 2013년에 26.1%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25.4%로 줄어들었다. 2015년에 26.0%로 차지하였으나 또 2016년에는 25.1%로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2017년에는 더욱 24.8%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25.1%, 25.5%로 2018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표 3-3> 중국은 한국 무역 수출의 비중

년도	수출액(백만불)	비중(%)	순위
2020	61,449	25.5	1
2019	136,203	25.1	1
2018	162,125	26.8	1
2017	142,120	24.8	1
2016	124,433	25.1	1
2015	137,124	26.0	1
2014	145,288	25.4	1
2013	145,869	26.1	1
2012	134,323	24.5	1
2011	134,185	24.2	1
2010	116,838	25.1	1

자료: 한국무역협회 정리함(2020년5월까지)

2. 한·중 반덤핑 분쟁 현황

<표 3-4>은 한국의 반덤핑조사는 1987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체적으로 총 176건을 신청하였다. 그 중에 조사개시는 총 167개를 진행하였다. 원심에서는 1987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95개로 신청하였고 조사개시는 91개를 진행하였다. 1987년~2020년 사이에는 전체 신청한 사건은 55건이었고 조사개시는 49건이 있었다. 원심 신청은 40건이었고 조사개시는 37건이었다.

<표 3-4> 한국의 반덤핑조사 연도별 현황

(’20.7월말 기준)

구분(단위:건)		87~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7	계	
반덤핑	전체*	신청	55	6	11	7	5	4	6	8	3	6	6	6	5	5	10	4	5	7	6	8	3	176(126)
		조사개시	49	5	11	7	5	4	6	8	3	6	5	6	5	5	10	4	5	7	6	7	3	167
	원심	신청	40	2	4	7	3	3	3	6	2	1	2	1	2	3	3	3	2	3	2	2	-	95(64)
		조사개시	37	2	4	7	3	3	3	6	2	1	2	1	2	3	3	3	2	3	2	2	-	91

자료: 무역위원회, www.ktc.go.kr(2020.7월말 기준)

<표 3-5> 한국의 반덤핑조사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20년 7월까지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은 총 320건이었고, 그중에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이 총 86건이 있었다. 아직 조사 중인 반덤핑조사 총 10건 중에 중국은 4건이 있었다. 긍정 판정에서 조치 중인 반덤핑은 총 39건인데, 그중에 중국은 11건이 있었다. 다른 한편, 총 182건 조치완료 된 반덤핑조사 중에 중국은 55건이 있었다. 기타사건은 총 89건인데 그중에 중국은 16건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을 일으키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한국의 반덤핑조사 국가별 현황

('20.7월말 기준)

구분 (단위: 건)	중 국	일 본	미 국	EU	대 만	인 니	인 도	말 련	러 시 아	싱 가 폴	태 국	캐 나 다	기 타	계	
조사 신청(조사 개시)	86 (83)	55 (51)	29 (27)	32 (31)	17 (17)	13 (12)	19 (19)	16 (15)	8 (8)	10 (9)	13 (11)	6 (6)	16 (14)	320 (303)	
조사 중	4	2	-	1	-	-	1	1	-	-	-	-	1	10	
긍 정 판 정	조 치 중	11	6	2	4	2	1	4	2	-	1	3	-	3	39
	조 치 완 료	55	36	18	13	12	6	11	8	5	7	4	5	2	182
기타*	16	11	9	14	3	6	3	5	3	2	6	1	10	89	

자료: 무역위원회, www.ktc.go.kr (2020.7월말 기준)

<표 3-6>에서 제시해 듯이 2012년에 목재 및 제품 공업에서의 반덤핑 사건은 1건이 있었고, 2013년에 플라스틱 제품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1건이 있었다. 2014년에 금속 제품공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1건, 2015년에 화학 원료와 제품공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1건, 2016년에 금속 제품공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1건, 2017년에 제지공업 및 금속 제품공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각각 1건이 있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제지공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각각 1건이 있었다. 따라서 금속 제품공업과 제지공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총 3건이 있었고, 금속 제품공업과 제지공업에서 반덤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한국의 대(對) 중국 반덤핑 사건

구분(단위: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지공업						1	1	1
철강 공업								
금속 제품공업			1		1	1		
화학 원료와 제품 공업				1				
목재 및 제품 공업	1							
플라스틱 제품업		1						

자료:中國貿易救濟信息<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2019년)

<표 3-7>에서는 2012년에 태양광발전 제품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1건이 있었고, 2015년에 화학 원료와 제품공업 및 철강 공업적 반덤핑 사건은 각각 1건씩 있었다. 2016년에도 화학 원료와 제품공업과 식품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각각 1건씩 있었고, 2017년에 화학 원료와 제품 공업적 반덤핑 사건은 3건이 있었다. 2018년에 화학 원료와 제품공업과 철강 공업적 반덤핑 사건은 각각 1건씩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화학 원료와 제품공업에서 반덤핑 사건은 2건이 있었다.

<표 3-7> 중국의 대(對) 한국 반덤핑 사건

구분(단위: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화학 원료와 제품 공업				1	1	3	1	2
철강 공업				1			1	
태양광발전 제품	1							
식품					1			

자료:中國貿易救濟信息[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2019년\)](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2019년))

제4장 한·중 반덤핑 사례분석

제1절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사례분석

1.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배경

타일은 건물 내 외벽 장식 및 바닥 장식에 주로 사용되며 2016년 한국 시장 규모는 약 6억 2700만 달러로, 이 중에 중국산은 약 60%, 한국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산 타일 판매가 부진하자, 반덤핑 조사를 통해 중국산 타일을 저가(低價)로 판매해 국내 타일업계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최근 환경인구 고령화 및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정부와 민간이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 플랜을 제시하는 등 녹색 건설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中國陶瓷工業協會에 따르면 2009년 중국 타일 대 한국 시장 진출은 약 2981만㎡, 매출은 1억 4000만 달러, 2010년 58만 2000t, 매출은 1억 4700만 달러였다. 중국에서 생산한 타일 중 90%가 건축공정에 사용되고 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중국산 타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가 상승, 공사 연기도 불가피한 원인이다.⁶⁸⁾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대(對)중국 타일의 반덤핑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분쟁사례

<표 4-1>에서 제시해 듯이 한국 대(對)중국 타일 반덤핑 판정 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6월 22일에 한국 무역 위원회는 중국 원산 타일에 대해 7.25~37.4%의 임시 반덤핑세를 부과한다는 초심을 내렸다. 2006년 4월 1일에 한국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즉, 광동호흥도자유한공사는 2.76%, 광동독수리표자유한공사는 3.51%, 불산시 흥도자유한공사는 3.97% 반덤핑세를 부과하였다. 2010년 8월 2일에 한국 대(對)중국 원산 타일 반덤핑 일몰 재심입안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7월 20일에

68) 中國貿易救濟信息网: <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

무역위원회는 중국 원산지의 타일에 대해서는 9.14~37.40%의 반덤핑세를 계속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2014년 2월 28일에 한국 무역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한 타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일몰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2월 25일에 한국 무역협회는 중국 타일 반덤핑을 확정하였다. 2017년 8월 22일에 한국 대(對)중국 원산 타일 반덤핑 일몰 재심입안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2018년 7월 19일에 중국산 타일에 부과되는 반덤핑세를 3년 더 연장해 9.06-29.41%의 반덤핑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016년까지 중국 타일 생산량은 2013년보다 22%를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운영 비율이 낮아져 수출능력이 늘어난 세계 6개국도 중국산 타일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건의에 따라 재무부는 향후 3년간 중국산 타일에 대해 9.06-29.41%의 반덤핑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⁶⁹⁾

69)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http://www.mofcom.gov.cn/>

<표 4-1>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 반덤핑 판정 과정

시간	사건 개요
2005.06.22	한국 무역 위원회는 중국 원산 타일에 대해 7.25~37.4%의 임시 반덤핑세를 부과한다는 초심을 내렸다.
2006.04.01	한국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 광동호홍도자유한공사: 2.76%, 광동독수리표지유한공사: 3.51%, 불산시 홍도자유한공사: 3.97%
2010.08.02	한국의 대(對)중국 원산 타일 반덤핑 일몰 재심입안조사
2011.07.20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원산지인 타일에 대해서는 9.14~37.40%의 반덤핑세를 계속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2014.02.28	한국 무역 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한 타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일몰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02.25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타일 반덤핑을 확정하였다
2017.08.22	한국의 대(對)중국 원산 타일 반덤핑 일몰 재심입안조사
2018.07.19	한국무역위원회는 공고를 내고 관련 제품에 대해 9.06~29.41%의 반덤핑세를 계속 부과할 것을 건의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료: 中國貿易救濟信息

3. 한국의 대(對) 중국 타일의 반덤핑 분쟁원인

1) 한국 국내 타일 산업 보호

中國陶瓷工業協會에 따르면 2009년 중국 타일 대 한국 시장 진출은 약 2981만 m², 매출은 1억 4000만 달러, 2010년 58만 2000t, 매출은 1억 4700만 달러였다. 증가된 중국 수출압력으로 인해 한국 국내의 관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경쟁 우위와 중국의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 시장의 무역보수 세력과 경쟁 상대는 당국을 상대로 반덤핑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라고 압박

하였다.

2) 한국 신(新)무역보호주의 발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보편적으로 침체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동력 값이 비싸고, 일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상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점차 경쟁 우위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3) 중국 타일 수출기업의 경제 관념

중국 타일 수출 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우위 중의 하나는 저비용에 세워진 비교적 낮은 가격인데, 바로 이러한 우위로 인해 수입국 기업의 반감을 쉽게 일으키며 수입국 기업이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4. 한국 대(對)중국 타일의 반덤핑 분쟁대책 및 시사점

1) 정부

(1) 정부 주도적 역할

기업들은 역외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소송 대항 체제를 구축해 정부의 자원 우위를 살려 반덤핑펀드, 반덤핑자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반덤핑조사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에 자금, 정보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부 정보 수집

중국 해외 주재 관공서, 외신 등은 수입국 수입 규제 동향과 수입국 관련 업종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국내로 즉시 보고하거나 관련 추적을 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무역경보를 잘 하는 것이 사전예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다. 예상되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 조직이 수출질서를 규율하고 수출시장과 수출물량을 조정해 무역구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반덤핑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원들 간의 교류

반덤핑 제소를 담당하는 기관원들은 반덤핑 판정을 하는 역할로서 상대국 산업에 관한 지식과 법률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 측면의 지식도 이해해야 한다. 업무 인원의 정기적인 교류, 예를 들어 반덤핑 관련 업무 인원은 상대국 관련 부서로 출근하여 서로의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나 반덤핑 고소를 제거하였다.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산업구조를 이해시킬 수 있다.

2) 기업

(1) 기업 적극 응소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은 기업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다. 반덤핑 안건 중,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은 의의가 분명히 크다. 한국 대중국 타일제품 반덤핑에 참여한 중국 타일업체 12개사는 2.76%~29.41%의 반덤핑관세를, 불응업체는 37.4%의 징 별적 관세를 각각 부과받았다.

(2) 기업 규범 형성

중국 타일업체들은 수출품 구조를 최적화하고 시장 조사를 강화하며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해 반덤핑 제소를 하는 등 기존의 저가 경쟁 모델을 서둘러 바꿔야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판매 가격이 수입국 현지 제품의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경제의 각종 정보자료를 확보하는 등 서로 다른 정책을 펴 반덤핑 불만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제품 품질 높임

중국 타일 기업이 반덤핑 조치를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덤핑, 즉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덤핑 비난을 피하려면 제품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과 부가가치를 더하며, 결국 가격을 올려 품질로 승리하는 것이 근본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에 대응해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와 대외 직접투자 등의 방법으로 특정 국가의 반덤핑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 다변화를 진행하려면 지나친 시장 유입으로 인한 반덤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장 세분화와 목표 선택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제2절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사례분석

1.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배경

2008년부터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은 미국과 한국의 덤핑 수입품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11년 말까지 덤핑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수입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중국 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대규모 가동 중단이라는 큰 어려움에 처하였다. 2012년 7월 20일에 중국 상무부는 입안 공고를 내고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4년 1월 20일에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한국 원산 수입 태양열 급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공고'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원산 조사 대상 제품은 덤핑, 중국 국내 산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⁷⁰⁾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거의 전 업종이 적자를 보면서도 고전하였다. 만약 덤핑 수입품이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밀어내도록 내버려 두면, 중국 태양광 산업 사슬의 원료 기초가 다시 사람에게 제약되어 중국 태양광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 대(對)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70) 中國貿易救濟信息网: <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

2.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분쟁사례

<표 4-2>에서 제시해 듯이 2012년 7월 20일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 원산지 수입 태양열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입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7월 18일에 중국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4년 1월 20일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 원산지 수입 태양열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폴리실리콘 무역구제에 조치를 취했다는 전제 하에 한국 폴리실리콘 대중국 덤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14년 중국은 폴리실리콘 35743t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전체 수입량의 35.0%를 차지하였고, 2015년에는 다결정실리콘 51189t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총 수입량의 43.8%를,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49468t을 수입해 47.8%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폴리실리콘 수입은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⁷¹⁾

2016년 11월 22일에 중국은 한국 원산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여 중간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21일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 원산지 수입 태양열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하였다. 2019년 1월 20일에 중국 상무부는 한국 원산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조정하기로 한다고 공시하였다. 2020년 1월 19일에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중단되면 미국과 한국 원산지 수입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대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국내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 또는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9일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한국 원산지 수입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세를 계속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한화케미칼코퍼레이션이 반덤핑 조치에 적용한 세율은 8.9%, 다른 한국 회사는 88.7%이다.

71) 中國貿易救濟信息网: <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

<표 4-2>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판정 과정

시간	사건개요
2012.07.20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 태양열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입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07.18	중국 조사기관 이번 조사기간 중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4.01.20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 태양열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한다.
2016.11.22	중국은 한국 원산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여 중간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11.21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 태양열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한다.
2019.01.20	중국 상무부는 한국 원산의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2020.01.19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중단되면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의 대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국내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5.29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세를 계속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화케미칼코퍼레이션이 이 반덤핑 조치에 적용한 세율은 8.9%, 다른 한국 회사는 88.7%다.

자료: 中國貿易救濟信息

3.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분쟁원인

1) 한국 대중 무역흑자

한국과 중국의 무역은 연중 수교 이후 급성장한 시기가 있다. 이런 성장은 어느 한쪽에서 반덤핑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중국 수입 1위 수입 규제국이 되는 것은 대중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한국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한중 수교 이후 내내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 중국 국내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 미비

중국 태양광산업은 아직 완전한 기술혁신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 중국 태양광산업 기술 핵심은 선진국과 비해 차이가 크며 특히 소재인 실리콘 가공에 대한 기술 핵심은 여전히 일부 해외 제조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산업은 주로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한다. 그리고 중국 태양광산업은 낮은 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산업, 환경오염 집약적 산업, 태양광 산업 국제 분업의 저단가공자이다. 결국 자금 기술 집약적 태양광산업은 조립가공에 의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한 셈이다. 노동집약적 제조를 통해 산업 사슬 중에 가장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을 차지하였고 극히 낮은 이윤을 얻었다. 핵심 기술과 창출메커니즘의 결여는 중국 태양광산업 사슬의 미성숙을 초래하였다. 핵심 기술의 우위가 없는 중국 태양광제조업체는 저가 경쟁 수단으로 해외시장에 수출되도록 압박한다.

4. 중국의 대(對) 한국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분쟁대책 및 시사점

1) 정부

(1) 한중 양국의 반덤핑협정 체결

반덤핑 협정 서명은 양국 공동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 면밀하게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산업과 국가의 경쟁 여건을 따져보고 정책법적 이견을 수렴해 양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양국은 보복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국내 가격이 올라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전 국민의 복지가 줄어들어 한국과 중국은 반덤핑 제소의 최대 피해국이 된다. 두 가지 관점에서 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반덤핑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즉, 양국 정부의 협조와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

(2) 무역적자 해소

10여 년간 한국 대중국 무역 흑자는 주로 핵심 부품소재에서 나온다. 산업, 즉 중간 원자재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조정을 위해 한국의 중간재 산업, 특히 중국의 선진 산업에 투자하고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산업별로 좀 더 포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양국 간 산업투자의 횡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해외 투자에 대해 중국 정부의 유연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도 지속적인 산업 개방을 통해 중국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과 함께 생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3) 보호관세 규정 완화

한중 양국 모두 자국의 민감한 산업에 대해 관세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양국 산업의 발전이 제한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 상품, 특히 농산물의 할당량 및 관세, 검역 등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중국은 섬유 및 의류 등에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보호관세 규제가 최소한 제한된다면 무역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덤핑분규를 막고 양국의 건전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4) 시장정보교환기구 설립

양국 정부는 무역 기구 내에 양국의 산업, 농업, 수공업 분야에서 서신으로 통지한다.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보완무역을 할 수 있는 교환창구를 마련해주는 공개정보는 투명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동안 한중 정부는 서로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열된 수출입 갈등을 찾지 못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대변인 역할만 해왔다. 시장기구는 정보교환시장의 정보교류를 제정하여 순조롭게 진행하면 기업의 시장, 유연한 국가, 과도한 경쟁, 덤핑수출입구조의 전환을 줄

여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2) 기업

(1) 기업의 감찰 역할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한 덤핑 행위를 발견한 후 즉시 고발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2) 기업의 기술 혁신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은 혁신을 강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며, 폴리실리콘 핵심 기술을 장악하여 브랜드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인다. 또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기업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3) 중국 태양광업체들에 대해 우승열패한 선별 진행

태양광산업 발전은 전략적 구조재편, 산업 최적화 등을 통해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술 수준이 낮아 창의력이 부족해, 대응 능력이 약한 업체들이 탈락되는 것은 양호한 태양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무역구제제도 중의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조항은 한계성이 있는 것과 달리, 전 세계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반덤핑 관세제도는 관련 산업이나 수입국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쉬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출자의 공정하지 않은 행위, 즉 덤핑에 있어서 수입제재에 의한 교역상대국의 보복 위협이나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반덤핑 관세는 실질적인 부과 여부 상관없이 그 효과가 대단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국은 높은 비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출국을 위협해, 수출업자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물량을 제한하도록 유도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 건수, 한·중 양국의 반덤핑과 관련된 조사절차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반덤핑 제기 및 제소내용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의 반덤핑분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방향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대(對)중국 타일 반덤핑안건을 중심으로 중국에 주는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기업들이 덤핑률 계산 문제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 반덤핑 조사기관인 무역위원회에 다양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여 최저한도의 덤핑률을 인정받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의 대(對)중국 타일 제품 반덤핑에 포함된 중국 타일 업체 12개사는 2.76%~29.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고 불응업체는 각각 37.4%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받았다.

둘째, 중국 기업들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공정성 여부가 한·중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한국 당국이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중국기업이 공청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공청회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자리로써 응소 기업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한다. 정부 부서가 이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반덤핑 분쟁 해결을 촉진한다. 한국 관세법 시행령 재정에 따라 경제부나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도 중국 타일업체들은 적극적인 공청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국의 대(對)한국 폴리실리콘 반덤핑안건을 중심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활용하여 대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 연맹 가격 조정 위주의 수출 전략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 경우 수출이 특정 시장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경보시스템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 중 한국은 2015-2017년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태양광폴리실리콘의 대 중국 수출에 대해 재조사를 공고하였다.

둘째, 한·중 경제교류를 강화한다. 중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도록 하여,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투자 등 무역협력이 기소 가능성을 인하시킬 수 있다.

셋째, 중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투자한다. 중국의 비효율적 시장에 대한 한국의 투자 문제는 오랫동안 중국 제조업의 투자 확대로 중국 내 동종 산업 경쟁이 치열하면서 중국 내 제품의 역수입이 한국 기존 시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 역수입 제품을 중국 제품으로 간주해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차별로 인해 전자제품, 철강제품 및 기타 일반제품 등의 반덤핑 제소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對)중 투자를 해야 한다.

제2절 향후 연구 과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보복이나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별의 특수한 해결방안이나 WTO 등 국제기관이 마련하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미래의 반덤핑은 지금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수출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제기하는 반덤핑 소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에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반덤핑이 일어난 이후 채택한 조치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된 해결책을 탐구해 내면 해외시장에서 본국의 최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문헌

- 고준성, “WTO 체제 이후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 평가 -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7, pp.08-17.
- 김철수, “WTO 반덤핑협정상 구성가격산정방법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7권 제6호, 2017, pp.19-27.
- 김용길,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6, pp.15-37.
- 박노형,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23.
- 박형래, “국가별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제도 결정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2, pp.22-36.
- 이재규·손성문,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2006, pp.33-36.
- 이평,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중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오문갑, “중국의 반덤핑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1호. 2014, pp.48-52.
- 조영진, “WTO 반덤핑협정상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 pp.21-24.
- 조일림·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8, pp.9-15.
- 최석범,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호, 2010, pp.20-37.
- 馬光,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1호, 2007, pp.22-27.

2) 중국문헌

- 劉遠震·彭劍波, “論我國反傾銷的現狀及對策”,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5, pp.22-26.
- 呂航譯, “歐共體反傾銷制度的突出特点”, 國際經貿探索, 2015, pp.58-65.
- 卜海, “國際經濟中的傾銷與反傾銷”, 中國經濟出版社, 2013, pp.07-09.
- 孔祥俊·吉羅洪, “反傾銷法律制度及申訴應訴指南”,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6. pp.16-20.
- 宋和平, “反傾銷法律制度概論”, 中國檢查出版社, 2010, pp.31-35.
- 劉遠震, “論我國反傾銷的現狀及對策”, 世界經濟研究, 2015, pp.11-15.
- 周曙東·吳方衛, “國際貿易中戰略性貿易保護的博弈分析—兼談反傾銷·特別保障措施和綠色壁壘”, 世界經濟研究, 2016, pp.26-28.
- 戴仲川, “中韓反傾銷法若干問題比較研究”, 中國新華出版社, 2017, pp.36-40.
- 孫錚·劉浩·李琳, “貿易救濟會計”, 北京經濟科學出版社, 2018, pp.46-48.
- 陶艷娟, “淺論反傾銷會計的理論結構”, 新華出版社, 2014, pp.16-18.
- 顏延, “法律背後的會計理念—從反傾銷法涉及的會計問題看會計對法律的影響”, 北京經濟科學出版社, 2017, pp.13-16.
- 袁磊, “反傾銷會計”, 北京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18, pp.27-29.
- 于永達·李振中·吳金希, “反傾銷案例”, 清華大學出版社, 2016, pp.56-6
- 樊永崗, “一個成功反傾銷應訴案例帶來的啟示”, 北京經濟科學出版社, 2016, pp.51-56.
- 沈木珠, “我國應對國外反傾銷與我國加強反傾銷”, 北京經濟科學出版社, 2018, pp.38-40.
- 郭羽誕, “反傾銷與中國產業安全”, 上海財經大學出版社, 2016, pp.18-23.
- 翁國民, “貿易救濟體系研究”, 法律出版社, 2017, pp.43-46.
- 袁磊, “反傾銷會計”,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15, pp.58-65.
- 顏延, “反傾銷司法會計——會計學視野下的反傾銷”, 中信出版社, 2016, pp.50-55.
- 唐宇, “反傾銷法理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8, pp.28-29.
- 劉遠震·彭劍波, “論我國反傾銷的現狀及對策”,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5, pp.22-26.
- 李磊, “當代國際反傾銷與對華反傾銷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17, pp.19-27.

- 朱欖叶, “WTO 爭端解決案例新編”, 中國法制出版社, 2018, pp.26-33.
- 傅東輝, “論貿易救濟”, 中國法制出版社, 2018, pp.11-19.
- 劉華, “反傾銷實踐的新動向”, 中國商務出版社, 2016, pp.36-40.
- 呂薇平, “WTO 爭端解決機制的正当程序研究”, 法律出版社, 2015, pp.08-15.
- 劉善春, “反傾銷訴訟理論与實務”,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7, pp.39-45.
- 叶波, “反傾銷法理選析”, 法律出版社, 2016, pp.17-29.
- 楊國華, “WTO 中國案例評析”, 中國法制出版社, 2018, pp.38-49.
- 王衡, “中國 WTO 爭端應對法律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19, pp.56-59.
- 褚霞, “貿易救濟性質研究”, 法律出版社, 2018, pp.17-39.
- 肖偉, “國際反傾銷法律与實務－歐共体卷”, 知識產權出版社, 2018, pp.20-31.
- 李勝敬, “國際反傾銷應訴和申訴操作指南”, 法律出版社, 2014, pp.36-38.
- 姜棟, “韓國反傾銷法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5, pp.36-38.
- 唐宇, “論反傾銷規則的弊端与改革”, 東北財經大學出版社, 2016, pp.09-18.
- 朱欖叶、賀小勇, “WTO 爭端解決機制研究”, 上海世紀出版集團, 2017, pp.15-20.
- 王傳麗, “國際貿易法”, 法律出版社, 2017, pp.13-23.
- 于永達、戴天宇, “反傾銷理論与實務”, 清華大學出版社, 2018, pp.09-14.
- 朱廣東, “國際貿易救濟法律問題研究”, 東南大學出版社, 2017, pp.22-24.
- 王培志, “對外貿易中的反傾銷對策問題研究”, 經濟科學出版社, 2015, pp.19-24.
- 陳明聰, “經濟全球化趨勢下反傾銷的法律問題”, 厦門: 厦門大學出版社, 2018, pp.21-28.
- 苑濤, “反傾銷的經濟影響: 對中國的分析”. 北京: 人民出版社, 2017, pp.07-18.
- 卓駿 “反傾銷預警系統研究”,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18, pp.19-22.
- 高永富, 張玉卿, “國際反傾銷法”, 夏旦大學出版社, 2017, pp.39-42.
- 李艷燕, “國際貿易概論”. 西南財經大學出版社, 2010, pp.39-48.
- 于永達, 戴天宇, “反傾銷理論与實務”, 清華大學出版社, 2016, pp.39-45.
- 黃岩君, “中國反傾銷實踐指南”,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14, pp.24-26.
- 尤宏兵, 劉卓林, “中國應對傾銷与反傾銷”, 人民出版社, 2017, pp.09-16.
- 吳清津, “WTO 反傾銷規則”, 广州: 廣東人民出版社, 2017, pp.46-49.

3) 영어문헌

Jorge Miranda, "Should Antidumping Laws be Dumped?",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XXVIII, No.1, 1996, pp.255-281.

Bernard Hoekman, "Free Trade and Deep Integration: Antidumping and Antitrust in Regional Agreements", *World Bank, Working Paper*, 1998, pp.9-13.

Ronald A. Cass,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ion Analysis in Antitrust and International Trade: A Comment",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LXI, 1993, pp.877-880.

4) 웹사이트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2011>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http://www.mofcom.gov.cn/>

中國貿易救濟信息 <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

ABSTRACT

A case study on Anti-dumping regulations of Korea and China

YAN XISHU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xchanges and interactions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have been developed more rapidly than expected, supplementing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than competition and division, so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hich will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to come.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the economic exchanges and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Korea are not confined to commodity transactions, but have developed to a level of capital,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transfer, and the interdependence of the two economies has increased rapidly. This reflec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actors of the two countries, the appropriat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the high degree of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economies. However, while these positive phenomena occur, contradictions and distrust between each other are growing, and they are developing more rapidly than thos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causes of the dispute are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regulation system, problems in trade skills, fierce competition and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orientation of the two countries. This is a great obstacle to the expansion of norm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will affect political relations and lead to diplomatic fric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more deeply the present situation of trade dispute between China and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To this end, the reasons for the trade disput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re broadly classified a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rade and the trade and the trade and the trade environment. Partial research. The above details are used to analyze cases, correlate them Information o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entral Magistrates is used to examine the deep causes of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case study of anti-dumping prosecution, which is the strongest of the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Korea, analyzes its economic influence on trade and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Finally, the countermeasures are put forward to minimize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 words: Antidumping, Trade disputes,